

사천시보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일자 : '99. 11.

제 출 자 : 사천시장

1. 제안이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보는 월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함(안 제2조)

나. 시보에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공지사항 등 시정소식 게재
(안 제3조)

다. 시보는 문화공보실장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입법예고

가. 예 고 기 간 : '99.10. 9.~ 10.28(20일간)

나. 예 고 방 법 : 일간신문 게재

다. 접수된 의견 : 시보는 문화공보실장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사천시보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사천시보” (이하 “시보”라 한다)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 활동
3. 공지사향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 및 운영) 시보는 문화공보실장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광고)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